KiRi Weekly 2012.5.29

금융보험 해설

손해보험 이해 5: 손해의 공동분담 – 공제와 공동보험

김동겸 선임연구원

-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 손해의 공동분담이란 손해보험에서 담보된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조항으로는 공제(deductible)[1)]와 공동보험(coinsurance)이 있음.

- 공제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보상지급액 중 감액되는 부분으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까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공제는 보험가입자의 손해 방지를 통해 담보된 사고의 발생 건수를 줄여, 손해사정비용이나 지급보험금 총액을 축소시킴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함.
    - 소액사고 발생 시 보상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손해사정비용은 손해보상비용과 비슷하거나 커질 수 있는 비효율적인 지출로서, 공제는 소액손해 발생 시 부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함.

- 공제는 크게 보험사고당 공제와 총액공제로 구분 가능하며, 공제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직접공제, 비율공제, 특별공제, 소멸성공제 등으로도 분류할 수 있음.
  - 보험사고당 공제는 각 항목(item), 지역(location), 배상청구 발생(occurrence)마다 적용을 시키며, 총액공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적용되는 공제액을 의미함.
  - 직접공제(straight deductible clause)란 일정 금액을 공제액으로 설정한 후 손해액이 초기에 설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보상을 하지 않고, 그 보다 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함.

---

1) 공제(控除)는 자기부담금액, 면책금액이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 비율공제(percentage deductible)란 보험금액, 보험가액[2], 발생한 손해액 등의 일정한 비율로 공제액을 설정[3]하는 것을 의미함.
- 특별공제의 유형에는 프랜차이즈공제(franchise deductible)와 대기기간조항(waiting period clause)이 있음.
  - 프랜차이즈공제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공제한도로 설정하고, 공제한도 미만의 소규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하여 주는 방식임.
  - 대기기간조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대기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을 초과하는 날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일컬음.[4]
- 소멸성 공제(disappearing deductible)는 일정액의 공제한도를 정하고, 공제한도액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나,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초과손실액의 100%가 넘는 비율로 보상하는 방식임.

■ 한편, 공동보험이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조건에 위배될 경우 가입자에게 발생 손실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함.

- 보험가입금액이 요구보험금액에 미달한 보험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의 경우 손실발생 시 공동보험 조항에 따라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므로,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됨.
- 공동보험조항에 있어서 손해액을 분담하는 방식으로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 즉, 부보율을 보험종목별로 정하여,[5] 그 이상이면 손해액 전액을 실손보상하고, 정해진 비율 미만일 경우 손해금액의 일부분을 비례보상함.

---

2) 보험금액(insured amount)이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한 보험급여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하며,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보험이익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액으로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발생 손해의 법정 최고한도액을 의미함.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보험으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초과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액의 합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중복보험으로 정의함.
3) 공제액을 보험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낮추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보험가액[1]에 따라 공제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4) 대기기간조항의 경우 질병 및 상해보험, 수출보험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손해 발생이후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 조항을 설정함.
5) 화재보험의 경우 80%, 주택생활보험의 경우 60%, 자동차종합보험차량손해의 경우 60% 등과 같이 coinsurance 비율을 설정해 놓고 있음.